# 2019년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(비R&D) 2차 수혜기업모집 공고

2019년도 중소벤처기업부와 구미시가 지원하는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(비R&D)의 수행기관 및 지원프로그램 등을 안내하오니, 해당 프로그램의 참여를 희망하는 구미시 소재 중소·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19년 10월 14일

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, (재)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장

### 1 지원개요

- [사업 목적] 지역전통산업인 전기전자 산업 기반 마이크로 e-모빌리티 관련 전후방 부품소재 개발 등을 통한 기업의 매출 증대 및 산업 생태계 구축
- [세부지원 조건] 각 프로그램 별 교차(복수)지원 가능
  - [지원한도] 기업 당 최대 <u>4개 프로그램(지원금: 30,000천원) 이내</u>
- [지원프로그램 및 내용] 과제 별 상세 지원프로그램 "별첨 1" 참조

지원유형	프로그램명	지원 내용	지원기관
		○ 완성형 시제품 제작지원	
	7] -1] <u>27</u> -1] -1	- 개발 제품의 상품화를 위한 시제품제작 지원	
	시제품 제작	○ 제품 외형(형상) 제작지원	
		- 제품의 외형(형상) 변경을 통한 실용성 및 내구성 강화	구미전자
		○ 생산 공정 개선 지원	정보기술원
기술지원	고려 캐셔	- 기존 공정의 조건 변경을 위한 관련 부대장치 변경	
기반기단	공정 개선	○ 공정 관리시스템·모니터링 체제 구축지원	
		- 공정관리 시스템 향상 및 보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설계	
	국내・외 인증	○ 국·내외 인증 획득 지원	경북차량용
	79 7 00	- 개발제품의 신뢰성 확보 및 시장진출을 위한 인증 획득	임베디드
	전문가 기술지도   ○ <b>전문가 기술지도/자문 지원</b>		
	(컨설팅)	- 애로기술에 대한 외부전문가 매칭 및 기술해결 자문	기술연구원
	전시회	○ 국・내외 전시회 참가지원	
	참가지원	- 참가비, 부스비, 통역비 등 지원	
시업화지원	제품홍보 지원	○ 홍보물 및 홍보 컨텐츠 제작지원	구미전자
	세품용보 시전	- 제품 매뉴얼, 브로셔, 홍보영상 제작지원 등	정보기술원
	수출전략	○ 수출전략 수립 지원	
	수립지원	- 기업내부 역량분석 통한 제품 수출전략 컨설팅 지원 등	

※ 마이크로 e-모빌리티 : 주로 1, 2인승 초소형 전기자동차를 말하며, 최대 출력 15kw(250cc), 최고속도 80km/h 이하의 차량으로 기존의 자동차보다 경제적이고 소형화된 생활 밀착형 근거리 이동수단

- o [지원 대상] 아래 신청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
  - [공통] 구미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·중견기업 (본사, 공장, 연구소 등)
  - ※ 부가가치세법 동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, 구미지역 과세납부 사업장이어야 함
  - [신청자격] 마이크로 e-모빌리티 관련 소재·부품 생산 및 생산 예정 기업
  - [지원분야] 마이크로 e-모빌리티와 관련된 전·후방 소재·부품, 시스템 등
  - ※ 예시) 전력변환시스템(인버터, 컨버터, 충전기 등), 통합제어부품(OBC, LDC 등), 배터리(부품), 하네스 및 배선소재, BMS 시스템, 각종 센서, 칩, 자율주행 관련 부품 및 시스템(차선이탈방지 시스템, 운전자 상태인식 시스템) 등 마이크로 e-모빌리티와 관련된 전 분야

### ○ [우대 사항] 중복 시 최대 가점 4점까지 부여(가점 증빙서류 제출 必)

구분	상세 내역					
	<ol> <li>경북지역 수출유망기업(경북TP선정) 2점</li> <li>중소기업청 지정 "수출유망중소기업" 2점</li> <li>수출실적 2점</li> </ol>					
- 우대사항	수출규모	0불 초과~10만불 이하	10만불 초과~평균수출액* 이하	평균수출액* 초과		
	가점	1점	1.5점	2점		
	기준 (2017년도)	0불 초과 ~ 10만불 이하	10만불 초과 ~ 중소/중견기업 평균수출액* 이하	중소/중견기업 평균수출액 초과		
	* 중소기업 평균수출액 1.0백만불, 중견기업 평균수출액 50.4백만불					

#### ○ **【사전제외 대상】** 「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」 근거

- ① 신청기업,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
- ② 제출서류(신청서 등) 미비기업
- ③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,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은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
- ④ 기업의 부도
- (5) 국세·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  - \*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 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)
- ⑥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  - \*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- ⑦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

연속 500% 이상(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%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 주한다)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

- \* 단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'BBB'이상인 경우, 기술신용평가기관(TCB)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"BBB "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% 이상이며,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,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
- \*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(CB, BW)를 통한 신 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
- \* 상기의 신용등급이 'BBB' 에는 'BBB+', 'BBB', 'BBB-'를 모두 포함함
- ⑧ 최근년도 결산 감사 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인 경우

## ②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- **[접수방법]** 지원기관(GERI, GIVET)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→ 신청 프로그램 별 각 지원기관 담당자 이메일 제출
- **[접수기간]** : 2019. 10. 14.(수) ~ 10. 25(금), 15시까지
- [양식 다운로드] 각 지원기관(GERI, GIVET) 홈페이지 내 사업지원 안내 게시판
  - · 구미전자정보기술원(GERI) : www.geri.re.kr
  - ·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(GIVET): www.givet.re.kr

### ○ [제출서류]

구분	제출서류 목록
필수	① (양식1)사업신청서 / (양식2)사업수행계획서 / (양식3~6)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최근 3년(2016-2018년) 재무제표 (※일반과세자 :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) ④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(신청일 기준)
해당시	(5) 수출증빙서류 : 수출유망기업 지정서(중기청), 수출실적(한국무역협회, 간접수출 등) (6) 공장등록증 사본 (7) 지식재산권, 인증관련서류 : 특허, 벤처기업, 메인비즈, ISO등 (8) 제품, 기술 홍보자료 : 제품 카달로그, 홍보 브로셔 등 (*** 다수의 프로그램 신청 시 중빙서류는 1개로 제출

### 3 유의사항

- o 세부 프로그램에는 기업부담금(<u>지원금액의 10%이상, 부가세 포함</u>)이 있으며, 결과보고서 제출 시 자부담 증빙내역(이체내역 등) 제출 必
  - ※ '전문가 기술지도'(컨설팅)은 기업부담금 없음(무상지원)
- ㅇ 지원금액은 부가세 포함임
- o 기업 부담금(자부담)은 <u>사업수행 기간 중 개별 상시 지출</u>(단, 선정기업 별 '공급기업' 확정 및 지원기관 검토 이후 가능)
- 지원 금액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<u>사업완료(결과보고서 제출) 후</u> 지급 위치(단, 지원기관의 구매절차에 따라 사업비 집행 방법 변경 가능)
- 제출서류가 허위, 중복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※ 중복지원은 최근 2년 이내 동일제품에 대한 동일내용 지원 여부로 판단

### ④ 추진일정 및 평가기준

모집 공고		신청서 접수		사전 검토		선정평가
19.10.14.~		~19.10.25		19.10.28~11.01		19.11.04~11.08
지원기관 홈페이지	$\Rightarrow$	신청기업 ⇒ 지원기관	$\Rightarrow$	참여제한, 중복성 등 검토 / 일자리평가	$\Rightarrow$	선정평가위원회 실시
						$\hat{\mathbb{T}}$
성과조사		지원금 지급		사업수행 결과보고		평가결과통보
년 중 2회 실시		결과보고 2주 이내		(상시)사업수행 종료 후		19.11.11~
지원기관	$\Diamond$	지원기관	$\Box$	수혜기업	$\Diamond$	
$\Rightarrow$		$\Rightarrow$		$\Rightarrow$		기업별 개별 통보
수혜기업		공급기업		지원기관		

- **[평가기준]** 선정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수혜기업을 최종 선정하며, <u>복수 프로그램</u> 신청 시 일부만 선정될 수 있음
- **[일자리평가]** <u>'중소기업 일자리평가'</u>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이 지원사업 신청 시 온·오프라인으로 <u>'정보활용동의서(양식6)'</u>를 작성하면, 일자리평가시스템에서 자 동으로 DB를 활용하여 각 평가항목을 확인·검증 후 평가점수 반영('별첨2' 참조)

## **5** 문의처

지원유형	프로그램	지원기관	담당자	전화번호	이메일
	시제품제작				
기술지원	공정개선	- 구미전자정보기술원	송병찬		
1	전시회참가지원	(GERI)		054-479-2053	songbc@geri.re.kr
사업화지원	제품홍보지원	(GLM)	선임연구원		
	수출전략수립지원				
기술지원	국내외인증	경북차량용임베디드 기술연구원	김기환	054-339-0051	khkim@givet.re.kr
기발시전	기술지도(컨설팅)	(GIVET)	연구원	004-009-0001	kiikiiii@givet.ie.ki

## 별첨 1

## 과제 별 상세 지원프로그램

## □ 세부 지원내용

지원유형	번호	프로그램	상세 지원내용
	1	시제품제작	<ul> <li>● 완성형 시제품 제작지원</li> <li>- 개발 제품의 상품화를 위한 시제품제작 지원</li> <li>- 완제품 또는 부품 설계, 하드웨어 제작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</li> <li>● 제품 외형(형상) 제작지원</li> <li>- 제품의 외형(형상) 변경을 통한 실용성 및 내구성 강화</li> <li>- 외형 설계, 역설계, 목업, 기구설계 및 제작</li> </ul>
기술지원	2	공정개선	● 생산 공정 개선 지원 - 기존 공정의 조건 변경을 위한 관련 부대장치 변경 ● 공정 관리시스템·모니터링 체제 구축지원 - 공정관리 시스템 향상 및 보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설계
	3	국내외 인증	● 국·내외 인증 획득 지원 - 개발제품의 신뢰성 확보 및 시장진출을 위한 인증 획득
	4	기술지도(컨설팅)	● 전문가 기술지도/자문 지원 - 애로기술에 대한 외부전문가 매칭 및 기술해결 자문
사업화지원	5	전시회참가지원	● 국·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- 참가비, 부스비, 통역비 등 지원 - 타겟마케팅 선정 및 전시회참가전략 등 지원
	6	제품홍보지원	● <b>홍보물 및 홍보 컨텐츠 제작지원</b> - 제품 매뉴얼, 브로셔, 홍보영상 제작지원
	7	수출전략수립지원	● <b>수출전략 수립 지원</b> - 기업 내부역량 분석을 통한 수출전략 수립 지원

### □ 세부 지원조건

지원유형	프로그램	최대지원금 (현금, 천원)	지원건수	기업 부담금 (현금, 천원)	비고
	시제품제작	15,000	2		
기술지원	공정개선	5,000	5		사업비 소진시까지
기물시권	국내외 인증	5,000	9		
	기술지도(컨설팅)	3,000	5	지원금의 10% 이상 (기술지도 제외)	
	전시회참가지원	5,000	5		
사업화지원	제품홍보지원	4,000	1		
	수출전략수립지원	1,500	3		

#### \* 각 프로그램별 교차(복수) 지원 가능(최대 4개 프로그램(지원금: 30,000천원 이내))

- \* 선정기업 대상 자사제품(아이템)에 대한 '신뢰성(특성)평가' 무상지원
- \* 평가에 따른 '최대지원금' 및 지원기업에 따른 '지원건수'는 변동 가능

### □ 문의처

지원유형	프로그램명	담당자	전화번호	이메일	지원기관
기술자원	시제품제작 / 공정개선	송병찬 선임	UEN 120 JUES	conabc@gori rola	구미전자정보기술원
사업자원	전시회/제품홍보/수출전략	<u> </u>	054-479-2053	songbc@geri.re.kr	TUMOTA [출전
기술자원	국내외인증 / 기술지도(컨설팅)	김기환연구원	054-339-0051	khkim@givet.re.kr	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

### 별첨 2

## 일자리평가 개요 및 평가항목

## Ⅱ 평가개요

- o [개요] 일자리를 창출하고,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일자리우수 중소기업을 정부 지원사업에 우대 선정하기 위해, '중소기업 일자리평가\*' 도입
  - \* (구) 중소기업 고용영향평가('19년부터 명칭 변경)
- **(절차)** 중소기업이 지원사업 신청 시 온·오프라인으로 '정보활용동의서'를 작성하면, 일자리평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DB를 활용하여 각 평가항목을 확인· 검증 후 평가점수 반영

### ○ [평가항목]

구 분	평가분야	평가항목	배점한도	비고
합 계			-20~100	
I. 일자리 잉	- 1. 고용증가	가.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규모 나.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상위 10% +70 상위 20% +60 상위 30% +50 상위 40% +40 고용 유지 +30 고용 감소 +20	70	가 항목(고용보험 가입자 증가)과 나 항목(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)을 각각 평가한 후 더 높은 평점을 반영
Ⅱ. 일자리 질	1. 성과공유	가. 미래성과공유 협약 (+10) 나. 성과급 지급 (+10) 다. 임금수준 상승 (+10) 라. 우리사주제도 운영 (+10) 마. 사내/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(+10) 바.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(+10) 사. 내일채움공제/청년내일채움공제/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中 1 (+10)	20	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
II. 될사디 설	2. 근로환경	가. 근로시간 단축 (+10) 나. 정주여건 개선 (+5) 다. 가족친화인증 (+5) 라. 청년친화강소기업 (+5) 마. 노사문화우수기업 (+5) 바. 인재육성형중소기업 (+5) 사.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(+5) 아.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(+5)	10	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
Ⅲ. 고용질서 준수	1. 법령 준수	가. 고액·상습 임금체불 (-10) 나.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(-10)	-20	

# ②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각 평가항목 별 개요 및 문의처

평가항목	내용 및 문의처
	■ (개요) 중소기업이 근로자와 성과급 등을 통해 경영이익을 근로자와 공유
미래성과공유 협약	하겠다고 사전 협약하는 제도
	■ (문의처) 중소기업진홍공단(055-751-9829), https://sanhakin.mss.go.kr
성과급 지급	■ (개요) 기업의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한 기업을 성과공유 도입기업으로 지정
	■ (문의처) 중소기업진흥공단 (055-751-9825), https://sanhakin.mss.go.kr ■ (개요) 근로자의 해당연도 펴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임금증가율의
임금수준 상승	■ (개요) 근도자의 해당원도 퍼판임금 등/물이 작전 3개 원도 평판임금등/물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기업을 성과공유 도입기업으로 지정
1 1 1 L 0 0	■ (문의처) 중소기업진흥공단 (055-751-9825), https://sanhakin.mss.go.kr
	■ (개요) '전체'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
우리사주제도 운영	기업 또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하에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회사의 주식 또는 지배
구디자구세도 군정	회사의 주식을 취득, 보유하게 하는 제도
	■ (문의처)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지원센터, https://esop.ksfc.co.kr
사내(공동)	■ (개요)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사용하기 위한 사내(공동) 근로복지
근로복지기금 운영	기금 법인설치 및 기금운영 기업을 성과공유 도입기업으로 지정
	■ (문의처) 중소기업진홍공단 (055-751-9825), https://sanhakin.mss.go.kr
주식매수선택권 부여	■ (개요) 특정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기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따라 일정 기간 내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
구격매구선역전 구역 	기선 내 배구될 구 ᆻ는 된다를 구역하는 제로 ■ (문의처) 중소기업진흥공단 (055-751-9825), https://sanhakin.mss.go.kr
	■ (개요)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
내일채움공제	더하여 5년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제도
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	■ (문의처) 중소기업진흥공단 1800-7900, https://www.sbcplan.or.kr/
	■ (개요) 청년/기업/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
청년내일채움공제	성과보상금 16백만원(+이자)의 만기공제금 지급하는 공제제도
	■ (문의처) 관할 고용복지+ 센터 (1350), http://www.work.go.kr/jobcenter
크리 1 링 크레 코티 크리	■ (개요) 청년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목돈 마련을 위해 청년근로자, 기업, 정부
청년재직자	가 공제부금을 적립하고 청년근로자가 5년 이상 재직하면 적립금+복리이자 전액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제도
내일채움공제	전력을 정된근도자에게 시합이는 중세세도 ■ (문의처) 중소기업진흥공단 1800-7900, https://www.sbcplan.or.kr/
	■ (개요) 근로시간 조기단축을 시행한 기업으로서 '근로시간 단축 확인서'를 발급받은
근로시간 단축기업	기업
	■ (문의처)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(지)청
	■ (개요) 중기부-국토부(LH)가 공급하는 '중소기업 재직자 전용 임대주
정주여건 개선	택'건설을 위해 부지를 제공한 기업
	■ (문의처) 중소벤처기업부 (044-201-1664)
기즈키되시즈	■ (개요)「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15조에 따라 여성
가족친화인증	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■ (문의처) 한국건강가정진흥원(02-6309-9048), http://www.ffsb.kr
-> >-> > > > > > > > > > > > > > > > >	■ (개요)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
청년친화강소기업	■ (문의처) 중소기업중앙회 (02-2124-3305), http://www.work.go.kr/smallGiants
	■ (개요)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
노사문화우수기업	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
	■ (문의처) 노사발전재단 (02-6021-1055), https://www.nosa.or.kr
	■ (개요)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제18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
인재육성형중소기업	으로부터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
	■ (문의처): 중소기업진홍공단 (055-751-9825), https://sanhakin.mss.go.kr
  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	■ (개요)「인적자원개발 기본법」제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 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
_ 고급시 현세환千千/1首 	작사권개월 구구기업으로 시정된는 기업 ■ (문의처) 한국산업인력공단 (052-714-8216), http://www.hrdkorea.or.kr
시키니키카사기가피	■ 안전보건경영체제 및 활동이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으로 안전보건경영시
안전보건경영시스템	스템(KOSHA 18001) 인증을 받은 기업
(KOSHA 18001)	■ (문의처) 안전보건공단 (052-7030-593), http://www.kosha.or.kr
·	